

#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

시행 : 2023. 09. 01.

**제33조(논문제출자격)**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
2. 학점의 평점평균이 B-(2.7) 이상인 자
3.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4.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

**제34조(학위자격 시험)** 학위자격 시험은 구술시험, 외국어시험, 전공시험, 공개발표 등의 학위 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하며, 학위자격 시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

#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시행 : 2023. 09. 01.

**제22조(학위자격 시험)** 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학위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- ② 일반대학원 학위자격시험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학위자격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.
- ④ 학위자격시험의 평가는 급제(P) 또는 낙제(N)로 한다.
- ⑤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.